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2015. 03. 01. 제정

2017. 07. 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자격,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등을 말한다.

제3조(자격)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교육 경력 3년 이상인 자
3. 해당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4. 본교에 2년 이상 재직한 비전임교원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제4조(임용절차) ①교원의 충원은 해당 학과장으로부터 채용요청을 받아 총장이 법인 이사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②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한 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③공개 채용은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공개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한다.
2. 지원자는 제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자는 면접 및 시범강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4. 서류 20%, 면접 40%, 시범강의 40%의 비율로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적격자로 한다.
5.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임용예정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임용제청을 한다.

제5조(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① 본교에 2년 이상 재직한 비전임교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표 1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2. 최근 2년간 교원평가 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인 자
- ③ 총장은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교원 전환임용을 제청한다.
④ 총장은 교원 전환여부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임용기간) ①교원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임용기간은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3년으로 한다.
②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안 될 경우 당연 퇴직한다.

제6조의1(재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2. 임용기간 중 교원평가 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인 자
- ①총장은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교원 재임용을 제청한다.
②총장은 교원 재임용 여부를 임용기간 만료 60일 전에 해당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의2(승진임용) ①교원의 직급은 조교수와 부교수로 한다.
②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의 소요년수 및 승진청구요건은 아래와 같다.

<승진소요년수 및 승진청구요건>

| 직명 | 승진소요년수 | 승진청구요건 |
|----------|-------------|-------------------------|
| 조교수->부교수 | 비정년트랙 전임 6년 | - 최근 2년간 교원평가 평균 80점 이상 |

| | | |
|--|--------------------------------|----------|
| | 비정년트랙 전임 2년 포함 본교 10년 이상 재직 | - 학과장 추천 |
|--|--------------------------------|----------|

③총장은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교원 승진을 제청한다.

제7조(의무) 본교에 임용된 교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책임강의 시수는 매 주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책임강의 이외의 학생활동 지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응한다.
3. 책임시수 미달일 경우는 당해 부족 시수에 대하여 감액 조치할 수 있다.
4. 본교 이외의 타 기관의 강의 및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4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임 조치할 수 있다.

제8조(계약해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기타 임용계약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전임교원의 복무사항을 준용한다.

제10조(보수 등) ①교원의 연봉은 계약으로 정한다. 연봉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교원의 연봉은 소속 학과장 추천서와 교원평가서를 참작하여 매년 계약으로

결정한다.

③연구활동에 따른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본교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교원에게는 연구년, 파견, 휴직 및 명예퇴직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용계약) ① 교원은 임면권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임용자 및 피임용자의 표시
2. 소속 및 직명
3. 임용기간
4. 담당직무 및 책임시수
5. 보수
6. 기타 임용조건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년트랙 전환) ① 본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원 중 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전환을 원하는 자는 별표 3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년트랙 전환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은 교원신규임용규정 제2조의1(특별채용 절차)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지침)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교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평가서

Instructor Evaluation Form

Name: (Sign)

Dept.:

Date:

Total: points

I. Teaching - 60 points max **Total:**
points

- A. Teaching (each bullet is worth 10 points; 30 points max.)
- Teacher has met minimum required teaching hours for each semester and has turned in lesson plans for his/her courses. ()
 - Teacher has taught overtime. ()
 - Teacher has taught additional courses as requested by IGSE, TTI, or Yoon' s English. ()
 - Teacher has taught a content course. ()
- B. New Course Development (each bullet is worth 5 points; 10 points max.)
- Teacher has developed a new course. ()
 - Teacher has developed new materials for an existing course. ()
 - Teacher has developed online or IT materials for a non-IT course. ()

- C. Student Evaluations (30 points max.) Average
points
- 4.5-5.0 = 30 points
4.0-4.5 = 25 points
3.5-4.0 = 20 points
3.0-3.5 = 15 points

II. Professional Development - 10 points max, each bullet is worth 5 points

Total: points

- A. Publications
- Teacher has published an academic publication. ()

- Teacher has published an online publication. ()
 - Teacher has published a publication as part of conference proceedings. ()
 - Teacher has published some other type of publication. ()
 - Teacher has co-authored a publication. ()
- B. Continuing Education
- Teacher has attended an academic conference and provided a educational sharing opportunity with fellow faculty and/or students. ()
 - Teacher has presented in an academic conference. ()
 - Teacher has participated in a professional development course.()

III. Service - each bullet points is worth 5 points; 10 points max.

Total: 10 points

A. Service to the School and Academic Community

- Teacher has organized a student club.
- Teacher has written, translated and/or proofread school-related materials including AGORA. ()
- Teacher has helped publish student work and/or helped students present at an academic conference. ()
- Teacher has served as an officer for a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or helped to organize a professional conference.

IV. Thesis Advising - 20 points max. Total: points

A. Thesis Advising

- Teacher has advised a thesis or theses.
 - 1-2 theses = 5 points ()
 - 3-4 theses = 10 points ()
 - 5+ theses = 15 points ()
- Teacher has proofread a thesis or theses.
 - 1-2 theses = 5 points ()
 - 3-4 theses = 10 points ()
 - 5+ theses = 15 points ()

[별표 3]

